

일반직(채용형 인턴) 가점기준 세부내용

□ 법정가점

구분		가점	비고
취업지원 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	필기전형, 면접전형 만점의 5~10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	「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		
	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		
	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		
	「5.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		
	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		
	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		

□ 선택가점

구분		가점	비고
장애인	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	필기전형, 면접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공단경력	공단 근무경력(무기계약직, 기간제 근로자, 인턴 등) 6개월 이상인 자	필기전형 만점의 0.5~2%	

□ 자격증 가점

구분		가점	비고
사무직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공인노무사	필기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
기술직	서류검증 필수자격 기준의 해당분야 기술사		
운영직	「수도법」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		

□ 가점 계산방법

- 법정가점 + 선택가점 + 자격증 가점
- 법정가점과 선택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10점 반영
- 자격증은 1개만 적용